

仲裁研究, 第 22 卷 第 3 號
2012년 12월 1일 발행, pp. 71~92

논문접수일 2012. 11. 05
심사완료일 2012. 11. 19
게재확정일 2012. 11. 28

인도 중재·조정법의 주요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in Characteristics in India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신 균 재*
Koon-Jae Sh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인도 중재법의 특성 |
| II. 선행연구검토 및 클레임현황 | V. 결론 |
| III. 인도 분쟁해결제도 | 참고문헌 |
| | Abstract |

주제어 : 인도 중재·조정법,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 관할재판권

* 신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skj0911@silla.ac.kr)

I. 서론

유로존 위기심화, 중국경기성장세의 둔화 및 미국의 경기회복지연 등 대외악재가 겹치면서 한국경제의 생명줄인 수출이 악화되고 있다. 대외적 환경변화는 국내경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을 줄여서 대외충격을 줄이기보다는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신시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¹⁾. 2000년 이후 부상하고 있는 인도는 한국의 중요한 교역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인도는 개혁개방이 시작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평균 6.6% 성장하였고, 2000년대부터 12억명의 거대소비시장이라는 장점과 빠른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인도가 9% 이상 고성장을 이룬 시기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에 불과하지만(각각 9.5%, 9.6%, 9.3%), 인도 GDP에서 대외교역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0.1%에서, 2010년에는 35.1%까지 상승하였다. 대외교역규모가 인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진 것이다.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수입규모도 나날이 증대하고 있으며, 수입 금액을 결제하는 데 필요한 외화 획득의 중요성도 늘었다²⁾. 대외적 교역의 증가, 해외직접투자 유입 및 인도 여러 분야에서의 자유화의 결과는 인도에서 중재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어졌다.

인도의 대외교역의 증가로 한국과 인도간 교역규모는 2000년 이후 괄목할 정도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2000년 13억 6천만 달러에서 2011년 126억 5천만 달러로 약 9.3배, 수입액은 2000년 9억 8천만 달러에서 2011년 78억 9천만 달러로 약 8배, 무역수지 흑자는 2000년 3억 8천만 달러에서 2011년 47억 6천만 달러로 약 12.5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역증가는 인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의 교역국가 다변화 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는 교역증가로 인한 분쟁의 증가가 수반되므로, 한국기업들은 인도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여야만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기업과의 분쟁은 그 해결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인도에서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소송에 의한 해결방법과 대체적분쟁 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고 칭함)이 있다. 인도에

1) 최남석, “한국 수출쇼크, 신시장 개척으로 해결해야”, 「KERI Column」, KERI 한국경제연구원, 2012.8.17., pp.1-2,

2) 포스코경제연구소, “Special Report; 인도 경제 난조의 원인, 공급 부족에 있다”, 「Chindia Journal」 Vol.67 March 2012, pp.38-39.

서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절차지연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ADR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의 대표적인 ADR방법으로는 협상(negotiation),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Lok Adalat) 및 중재(arbitration)가 있다. 이 중에서 중재는 인도기업과의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분쟁해결방법이다. 한국기업이 인도기업과의 무역분쟁을 인도 내에서 중재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재법의 특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중재법의 발전과정 및 1996년 개정된 인도 중재·조정법의 주요 특징들을 인도의 구 중재법(1940)과 비교하여 먼저 살펴보고, 인도기업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로 해결할 경우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검토 및 클레임 현황

1. 인도에 관한 선행연구

무역분야에서 인도에 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김희준은 인도의 통상환경을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인도인의 국민성, 생활방식, 상거래관행 등을 분석하여 거래시 유의점을 제시하였다³⁾. 이종원은 한·인도간 통상분쟁 현황 중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⁴⁾. 박찬호는 인도의 사법제도 중 특히 ADR 법제 특히 중재 및 조정 제도를 개괄적으로 기술하였다⁵⁾. 박양섭은 대한상사중재원이 2007년 제정한 국제중재규칙과 인도의 중재규칙을 중재조항과 범위, 통지 및 서면제출, 중재인의 수와 선정, 중재장소와 언어 및 중재비용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⁶⁾ 신군재는 인도의 ADR제도를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한국기업들이 인도내에서 ADR를 활용한 분쟁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⁷⁾. 앞의 두 연구는 주로 인도와의 교역에 따른 통상환경에 관한 연

3) 김희준, “인도의 통상환경과 상관습에 관한 소고”, 『통상정보연구』 제8권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9., pp.259-275.

4) 이종원, “한·인도간의 통상분쟁 현황과 사례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2권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 9., pp.391-412.

5) 박찬호, “인도의 사법제도와 소송의 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9., pp.95-116.

6) 박양섭,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 인도중재원 중재규칙 비교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8., pp.125-144.

7) 신군재, “ADR을 통한 인도기업과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9., pp.49-73.

구이며, 뒤의 세 연구는 양국간 교역에 따른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분쟁해결에 대한 앞의 두 연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이 2011년에 인도중재원의 중재규칙은 2012년에 각각 개정되어 새로운 비교 분석이 필요하며, 신근재의 연구는 인도의 ADR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인도의 중재법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 한·인도 클레임 현황

2000년 이후 한국과 인도간 교역의 증가는 클레임 발생으로 이어졌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자료에 의하면, '00년에 6건이었던 것이 '04년부터 '09년까지는 2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10년부터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 아직까지는 전체 교역량에 비하여 클레임 건수는 크지 않다(표 1).

한편, 지난 10년간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한·인도간 알선건은 181건으로 년 평균 16건 이상이, 중재 건은 총 22건으로 년 평균 2건이 접수되었다.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 한·인도가 교역에 따른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재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주요 분쟁해결제도를 개관하고, 국제적인 효력과 최종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인도의 현행 중재·조정법의 주요 특징들을 구 인도중재법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표 1〉 한·인도 알선 및 중재 사건현황

(단위: 건)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알선	4	8	6	13	22	25	18	20	22	19	13	11
중재	2	4	0	2	0	4	3	0	0	4	1	2
계	6	12	6	15	22	29	21	20	22	23	14	13

자료 : 대한상사중재원 내부자료

Ⅲ. 인도 분쟁해결제도

1. 인도의 소송제도

인도의 법제는 일반법(common law)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례가 국법과 똑같이 강제력을 가질 정도⁸⁾로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인도의 법은 영국법의 영향으로 대법원과 고등법원 소송절차의 언어뿐만 아니라, 대부분 상사 및 기업 법, 토지에 관한 절차법의 언어가 영어로 규정되어 있다.

인도의 사법제도는 대법원(최고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구분된 3심제이다. 각 지방행정구역에는 지방법원이 있고, 뭄바이와 구와화티과 같은 몇몇 도시를 제외한 각 주에는 21개의 고등법원이 있으며, 최종 법원으로서 대법원(최고법원)이 있다.⁹⁾ 인도의 사법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다는 명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법률을 폐기할 권력이 부여되어 있고, 또한 주 정부의 행위가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거나 독단적이라는 이유로 주 정부의 행위에 개입할 수도 있다.¹⁰⁾ 하지만, 인도법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판사 및 직원 수, 편의시설 등 인프라 부족, 부적절한 법원 절차와 규칙 그리고 기술이나 상사적 문제의 전문가 부족 등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인도에서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는 번거롭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¹¹⁾

인도의 이러한 사법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국 기업들은 인도 기업과 분쟁이 발생하면 인도에서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ADR의 각 방법 중 하나 또는 둘이상의 결합된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ADR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각 ADR 방법들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¹²⁾

8) Vaish Associates, Advocates, REPORT ON Strategies for Doing Business in India, The Commercial Section of the Royal Norwegian Embassy, 2010, p.70.

9) Kachwaha & Parners, "The Indian Judicial System: An Introduction", (www.kaplegal.com/articles/indian-judicial-system.html; 20 Nov.2011).

10) Sumeet Kachqaha and Dharmendra Rautray, "Dependability, diversity and delay", IFLR Litigation & Dispute Resolution p.3.(www.iflr.com; 23 April 2012).

11) KOTRA, "인도내 비즈니스분쟁, 소송해결 기대어렵다", 뭄바이무역관 자체보고서, 2009.08.31(<http://www.globalwindow.org>) 자료원 "주간 Indian Today 2009.9.7, 세계은행 "Doing Business India 2009", 인도대법원, 인포시스 CEO 기고문, 뭄바이KBC 자체 조사 종합에서 재인용.

12) 신군재, 전개논문, p.56.

2. 인도의 ADR 제도의 비교

(1) 인도의 각 ADR제도 비교

인도에서는 일반 민사사건, 특히 당사자간 계약, 보험, 특허분쟁 등과 같은 상사 사건에 널리 ADR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¹³⁾ ADR은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메카니즘으로 중재, 조정, 협상을 비롯한 법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다른 분쟁해결수단을 말한다¹⁴⁾. ADR은 당사자들의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분쟁해결수단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¹⁵⁾ 인도에서의 ADR은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기 수세기 전부터 Panchayat 시스템¹⁶⁾이라고 하는 중재·조정제도가 유지·발전해왔으며, 1930년대부터 공식적인 법률이 제정되었다. 중재에 관한 법으로 인도의 ADR법은 1937년 조약과 협정에 관한 중재법[Arbitration (Protocol and Convention) Act of 1937], 1940년 중재법(Arbitration Act of 1940)과 1961년 외국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법률[Foreign Award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ct of 1961]이 있었으며, 1996년 중재·조정법(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87년 법률서비스당국법(The Legal Services Authorities Act; 1987)을 제정하여 인도 고유의 분쟁해결제도인 Lok Adalat을 ADR제도로 공식화하였다.

인도에서도 분쟁해결을 위한 ADR제도는 협상,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Lok Adalat) 및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¹⁷⁾ 협상과 조정 중 mediation은 사전 합의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conciliation, Lok Adalat와 같은 조정

13)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인도편」, 해외지적재산권보호센터, 2008.10, p.198.

14) DM Popat, "ADR and India: An Overview", The Chartered Accountant, December 2004, p.749.

15) 신군재, "한국에서 ADR정착화를 위한 상설ADR 기관의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 제161권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6. 8. p.186.

16) 이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과 마찬가지로 마을에서 일어난 분쟁을 그 마을의 가장 연장자가 해결하는 전통적 관습이다. 인도에서는 이러한 전통적 분쟁해결절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 간에 일어난 분쟁에 빈번하게 적용되었다. Anil Xavier, Symposium: Mediation: Its Origin and Growth in India, Journal of Public Law & Policy, Vol. 27, 2005, p.275.

17) 인도에서 conciliation과 mediation 간 차이를 정리하면, conciliator는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가능한 해결안의 조건들을 구체화하고 재 구체화할 수 있는 반면에 mediator는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없고, 단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해결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M. Jagannadha Rao, "Concepts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and Their Differences", p.16.

(http://www.lawcommissionofindia.nic.in/adr_conf/mediation%20succed%20Rao%202.pdf; 20 March, 2012)].

및 중재는 당사자의 사전 합의 또는 법에 의한 직권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인도의 조정제도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크게 conciliation, mediation 및 Lok Adalat로 구분할 수 있다. 인도의 독특한 제도인 Lok Adalat는 중립적인 제3자가 분쟁 해결책을 당사자들이 찾도록 도와주는 공식적인 절차이다. 이 제도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조정(mediation)과는 달리 법률서비스당국법에 의하여 행해지는 공적인 분쟁해결제도라는 점에서 mediation과 차이가 있다. 또한, Lok Adalat가 또 다른 공식적인 ADR제도인 조정(conciliation)과의 차이점은 조정(conciliation)은 중재·조정법(1996)에 의하여 진행되는 반면에 Lok Adalat는 법률서비스당국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차이점이 있다.

〈표 2〉 인도의 ADR제도의 비교

	협상	조정			중재
		conciliation	mediation	Lok Adalat	
제3자개입여부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선행요건	없음	당사자합의	없음	당사자합의	당사자합의
공식성여부	비공식성	공식성	비공식성	공식성	공식성
구속력여부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관련법	없음	인도중재·조정법 인도민사소송법	없음	법률서비스당국법	인도중재·조정법

자료 : 기존 자료들을 토대로 본인이 작성함

국제거래에서, 비즈니스맨은 자신들의 시간, 돈 및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시간이나 경비가 적게드는 중재가 소송보다 선호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중재에서 분쟁당사자들은 분쟁의 의사결정자를 자신들이 선택함으로써 판사에 의한 결정을 피할 수 있다.¹⁸⁾ 또한, 기업들은 경제환경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적 효력이 있는 중재를 소송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방어적 수단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이유로 주로 대기업과 선도적인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한 Ernst & Young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4%가 법률 계약서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중재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⁰⁾

18) DM Popat, op., cit., p.749.

19) Pankaj Kumar Gupta and Sunil Mittal, "Commercial Arbitration in India", IPEDR Vol.2, 2011, p.187.

20) Kamal Shah and Jide Adesokan, "Turning India Into a Hub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인도에서 중재는 임의중재로 행해져오다가 인도중재원이 설립되면서 기관중재가 등장하였다. 인도의 중재기관은 인도중재원(The Indian Council of Arbitration; ICA), 상업회의소(The Chamber of Commerce(organized by either or trade), 인도상공회의소 연합(The Federation of Ind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FICCI) 및 대체적분쟁 국제센터(The International Center for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ICADR)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대표적인 기관은 인도중재원이다. 인도중재원은 1965년에 설립되었으며, 인도 전역에 8개의 지점을 갖고 있다.

(2) 인도 중재법 변천과정

인도 중재는 고대 때부터 행해져 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인도에서의 상사중재는 분쟁이 5명의 현자에게 부탁되었을 때 이들의 결정이 신의 결정과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Panch Parmeswar”를 폭넓게 인정하여 인도의 전통적인 생활에서도 활용되어 왔다.²¹⁾ 현대적 중재는 영국 식민지 시절인 1772년 Bengal Regulation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법에서는 회계, 동업자행위, 및 계약위반과 같은 소송에서 판사가 양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로 회부한 경우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영국에서 독립한 후 인도는 조약과 협정에 관한 중재법(Arbitration (Protocol and Convention) Act of 1937), 인도 중재법(Indian Arbitration Act of 1940) 및 외국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법률(Foreign Award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ct of 1961) 등이 제정하였다.²²⁾ 1940년 인도중재법은 국내중재에만 적용되었으며,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부탁하기 전, 중재판정부에 의한 절차진행 중 그리고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에 법원의 개입을 요구하였다. 각 절차별도 법원의 개입을 요구한 1940년 중재법은 중재절차를 비효율적이고 비 매력적으로 만들어 중재제도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는 1996년 UNCITRAL 모델법의 많은 내용을 수용한 중재·조정법을 제정하였다. 새로운 중재·조정법은 구법의 비효율성과 국내 및 국제 상거래 분쟁 관련 법의 불일치로 인하여 인도의 경제적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즉, 1990년대 초 인도가 자유무역과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지만, 법률제도가 뒤쳐져 분쟁을 신

Corporate Counsel, August 7, 2012. http://www.law.com/jsp/cc/PubArticleCC.jsp?id=1344159194550&Turning_India_Into_a_Hub_for_International_Arbitration)

21) Pankaj Kumar Gupta and Sunil Mittal, op. cit., p.186.

22) Krishna Sarma, Momota Oinam and Angshuman Kaushik, “Development and Practice of Arbitration in India-Has it Evolved as an Effective Legal Institution?” CDDRL Working Papers, No. 103, Center on Democracy, Development, and The Rule of Law(CDDRL), Oct, 2009, p.2.

속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중재법이 필요하였다.²³⁾

새로운 중재법의 목적은 중재절차에서 법원의 감독역할을 최소화하고, 중재판정이 법원의 명령처럼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²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도의 중재·조정법은 일반적 중재관련 규정,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조정 및 추가조항 등 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중재관련 규정에서는 국내 및 국제 중재 구분, 중재합의,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진행 및 판정 절차, 중재판정에 대한 구제(recourse), 중재판정의 최종성 및 집행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New York Convention 뿐만 아니라 Geneva Convention에 의한 중재판정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IV. 인도 중재법의 특성

1. 일반적 특성

(1) UNCITRAL 모델법 수용

인도의 중재·조정법은 1985년 UNCITRAL 모델법 및 1976년 UNCITRAL 중재규칙을 기반으로 제정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UNCITRAL 모델법은 국제상사중재에서만 적용되지만, 인도 중재·조정법은 국내 및 국제 분쟁 모두에 적용되며, 법원간섭의 최소화라는 면에서 UNCITRAL 모델법에 없는 법원의 개입이라는 규정²⁵⁾을 두었다. 즉, 본 part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법원이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중재에 대한 통제 최소화, 중재판정취소범위축소, 법원감독축소, 중재판정의 최종성보장 및 중재절차의 신속화를 꾀하고 자 하였다²⁶⁾. 특히 동 법은 구 법 규정과 달라 과거 56년 이상 행해진 인도 내 중재에 관한 판례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다.²⁷⁾

23) MSc in China in Comparative Perspectives, "A Comparative Study: The Rule of Law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and India", Candidate No.42207, Sep.2007, p.11. (<http://www2.lse.ac.uk/economicHistory/Research/CCPN/publications/Dissertations/DissertationsCCP/42207.pdf>)

24) Sumeet Kachwaha, "The Arbitration Law of India: A Critical Analysis", Asia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Vol. 1 No.2, 2005, p.110.

25) 인도 중재·조정법 제5조.

26) Abhinay Kapoor, "Scope of Judicial Intervention i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 Indian Council of Arbitration Vol. XLVII, ICA, July-September, 2010, p.25.

27) Krishna Sarma, Momota Oinam and Angshuman Kaushik, op.cit., p.4.

(2) 기관중재 비중 증대

중재는 임의중재와 기관중재로 나누어진다. 임의중재는 일반적으로 기관중재보다 더욱 탄력적이고,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만, 명확한 절차규정 결여 및 관리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인도 중재는 임의중재와 기관중재 모두가 가능하나 그동안 주로 임의중재로 이루어져 왔고, 통상 중재비용은 소송비용보다 낮다. 그렇지만 인도의 임의중재는 높은 중재인 수당과 잦은 심문연기로 인하여 중재인수당을 증가시켜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재가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²⁸⁾ 또한, 인도의 임의중재는 중재인의 중재사건의 수임 경험부족으로 관리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그 비용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의 임의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 의한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여길 정도로 역효과를 낳았다. 이러한 역효과의 한 예로 인도 하급심에는 임의중재판정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상당히 계류 중에 있다.²⁹⁾

따라서, 인도에서는 기관중재를 통한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인도중재원을 비롯하여 상업회의소, 인도상공회의소 연합 및 대체적분쟁국제센터 등이 설립되었다. 인도의 중재기관들은 자체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중재인수당, 중재장소 임대료, 행정/직원 경비, 대리인이나 증인 등 전문가 수당 등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중재인을 확보하는 등 임의중재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³⁰⁾ 이로 인하여 인도내에서 기관중재에 의한 중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3) 당사자자치원칙

1996년 인도 중재·조정법은 1940년 중재법과 달리 분쟁당사자들이 적용하기를 원하는 규칙과 중재인 선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법부가 법 자체에 규정된 조항이외에는 중재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구 법과 달리 중재합의 당사자는 반드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는 직소금지의 효력을 두었다. 동법에 따라 당사자들은 중재합의 시 준거법, 중재장소 및 중재절차를 인도 내이든 외국이든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당사자들은 분쟁을 전통적인 소송제도에 의하지 않고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 당사자자치

28) *ibid.* pp.17-18.

29) *ibid.*, p.7.

30) Pankaj Kumar Gupta and Sunil Mittal, *op.*, cit., p.189.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중재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³¹⁾

(4) 국내 및 국제중재 구분

1996년 인도 중재·조정법은 국내의 모든 중재를 망라한 규정이다. 국내중재와 국제상사중재는 법원에 의한 중재인 지명과 준거법 결정에 관한 2가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동법은 국내중재³²⁾, 국제상사중재,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및 조정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국내의 중재 모두에 적용된다. 국제중재만을 위한 특별 절차규정으로 Part II에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³³⁾ 당사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인도에서 행해지는 모든 중재는 Part I에 지배를 받는다.

Part I에서는 분쟁의 중재적합성, 법원의 비개입,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판정부의 관할재판권, 중재절차, 중재판정 및 집행에 관한 소구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인도대법원은 Part I을 국내 및 국제 중재 모두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였다. 예로서, 인도대법원은 ICC중재규칙에 따라 임시적 보전을 요청한 *Bhatia International v. Bulk Trading* 사건에서 Part I의 임시적 보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국내중재만 규정한 것으로 적용할 법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법의 적용을 배척하지 않는 한 국제중재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³⁴⁾ Part II에서는 New York 협약과 Geneva 협약에 의해 지배되는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5) 조정(conciliation) 승인

1996년 인도 중재·조정법은 인도의 조정제도의 하나인 conciliation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conciliation은 당사자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3자인 conciliator 수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정하되, 통상 1인에 의하여 진행된다. conciliator는 민사소송법이나 인도의 증거법에 구속받지 않으며, 관련 자료들을 당사자에게 요청하여 수집한다. conciliator는 자료 수집 후 해

31) Vaish Associates, Advocates, op.cit., p.71.

32) 국내중재는 당사자 모두가 인도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지가 인도이면서 중재장소가 인도로 되어 있는 중재사건을 말한다.

33) 인도 중재·조정법 part 1.

34) Sumeet Kachwaha and Dharmendra Rautray, ARBITRATION IN INDIA: AN OVERVIEW, Kachwaha & Partners, p.3[<http://ipba.org/media/fck/files/Arbitration%20in%20India.pdf>(2012.8.21 방문)].

결책인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재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조정안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어,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조정인 (conciliator)과 당사자들은 조정절차 및 합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중재절차의 특성

(1) 중재합의 및 적용범위

인도중재법은 절차진행에 관한 특별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중재판정부에 의한 절차진행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³⁵⁾ 중재는 거래 당사자들의 명백한 합의에 근거를 둔 비 사법적이며, 구속력있는 분쟁해결수단이다. 당사자 간 합의의 형태는 당사자들의 계약조건에 나타나 있다.³⁶⁾ 중재합의는 교환된 서한뿐만 아니라 형식에 상관없이 서면합의라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진신통신문도 가능하다. 서면합의도 반드시 서명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의 행위로 확인된 서명되지 않은 합의도 중재합의로 유효하다. 즉, 한 당사자가 주장하고 타방 당사자가 부정하지 않는 교환된 클레임서한 및 답변서가 있는 경우도 서면합의로 간주된다. 또한, 중재합의는 별도의 합의가 요구되지 않고,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도 충분하다.³⁷⁾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서 중재조항은 본 계약과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본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중재조항은 유효하다.³⁸⁾ 본 중재법의 적용범위는 인도에서 행해지는 인도인 간 분쟁 및, 인도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간의 분쟁 모두에 적용된다. 즉, 인도에서 행해지는 국내외 모든 중재를 포함한다.

중재합의시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과 관련된 경우 불법행위를 포함한 상사적 분쟁은 중재의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공서양속인 혼인문제, 형사적 절차, 파산 문제, 반 경쟁법 또는 상사적 법률문제 등은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용계약은 중재

35) 김광수, “한·인도 무역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10. 봄호, pp.47-48.

36) MSc in China in Comparative Perspectives, op., cit., p.6.

37) 인도 중재·조정법 제7조.

38) 인도 중재·조정법 제16조 제1항의 (a)와(b).

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사와 회사 간 분쟁은 중재의 대상이 된다. 법원재판소를 통한 법률적 구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³⁹⁾

(2) 법원의 비간섭 원칙

1996년 중재·조정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인도의 중재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고, 또한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쇠퇴할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에 법원이 중재절차에 간섭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었다. 1996년 인도 중재·조정법의 특징 중 하나는 중재인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중재절차 중 법원의 감독적 역할을 최소화한 점이다.⁴⁰⁾ 동 법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중재인선정 및 임시적 보전조치를 위해서만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인도 법원은 첫째, 당사자들이 중재인 선정을 하지 못하거나, 둘째, 중재인이 그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중재절차가 기간 내에 진행하지 못하여 그의 위임권한이 종료된 경우, 셋째, 증거취득의 도움을 위하여 개입하게 된다.⁴¹⁾ 인도 법원은 원활한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증거 보전, 상품의 가압류나 판매, 분쟁금액의 보증, 재산의 유치, 보전 또는 검사 등과 같은 임시적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법원은 또한 어떠한 임시적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분쟁 목적물의 보호를 위한 관리인을 선정하고 중재판정의 집행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⁴²⁾ 한편, 인도 대법원은 *Venture Global Engineering v. Satyam Computer Services(Venture Global)*에서 당사자에 의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중재법제34조(중재판정 취소)는 국제상사중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인도법원의 개입을 보다 확대하였다.⁴³⁾

(3) 중재인 선정절차 및 기피

국제 중재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의사결정자인 중재인, 절차 및

39) Sumeet Kachwaha and Dharmendra Rautray, op., cit., p.4.

40) Krishna Sarma, Momota Oinam and Angshuman Kaushik, op., cit., p.18.

41) Sumeet Kachwaha, op., cit., p.110.

42) Vaish Associates, Advocates, op., cit., pp.71-72.

43) Vasudha Sharma and Pankhuri Agarwal, "Rendering India Into An Arbitration Friendly Jurisdiction-Analysis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1996", NUJS LAW REVIEW, 3 NUJS L. Rev.535, 2010, p.532. (<http://www.nujslawreview.org/articles2010vol3no4/vasudha.pdf>).

규칙을 선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능력이다.⁴⁴⁾ 인도 중재·조정법에서는 중재인 선정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자치를 인정하였다. 당사자들은 중재인이 짝수가 아니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중재인 수를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인 수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독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 3인의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재인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각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지명된 중재인들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⁴⁵⁾ 그렇지만 단독 중재판정부이든 3인 중재판정부이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 중에 당사자 또는 지명 중재인이 요청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수석재판관이, 국제 상사 중재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수석재판관이 중재인 선정을 위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모델법에서는 단순히 법원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도의 대법원은 *Sukanya Holdings(P) Ltd. v. Jayesh H. Panda* 사건⁴⁶⁾에서 법원은 현행 사법적 절차에서 중재로 회부되는 문제에 있어서 법원 개입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중재인선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역할과 사법적 권한을 확대하였다. 더욱이 대법원은 *SBP & Co v Patal Engineering Ltd.* 사건에서는 법원에 의한 중재인 지명은 단순히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법적 기능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동의하고 난후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반대한 상황에서만 중재인들이 자신의 권한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⁷⁾

중재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다. 기타 고려되어야 하는 중재인의 자격은 UNCITRAL 모델법 제12조와 UNCITRAL 중재규칙 제10조와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재인은 중재인으로 선정된 시점 또는 중재절차 전 과정을 통하여 이에 관한 정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즉시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첫째, 그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타당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둘째, 당사자가 합의한 자격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에 기피된다.⁴⁸⁾ 중재인 기피절차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다고 인지한 날 또는 중재인 기피 상황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44) 신군재, “한-중미 중재인의 선정 및 기피에 관한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21권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p.187.

45) 인도 중재·조정법 제10조.

46) Appeal (civil) 1174 of 2002, 2003. 4.14.

47) Sumeet Kachwaha and Dharmendra Rautray, op., cit., pp.5-6.

48) 인도 중재·조정법 제12조.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거나, 당사자 합의로 기피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당사자 합의에 의하거나 또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중재인 기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만약 기피 신청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법률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중재인이 그의 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지체없이 행하여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중재인 권한을 종결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중재인의 권한은 중재인이 어떤 이유로든 사임하거나, 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다. 중재인이 사임된 경우 중재인선정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대체 중재인이 선정된다. 중재인이 대체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재량으로 이전의 심리를 되풀이할 수 있다.⁴⁹⁾

(4)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및 권한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재나 유효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그 자신에 대한 관할재판권을 갖고 있다.⁵⁰⁾ 즉,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재 또는 유효성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경우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다.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이 없다는 소는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전에 제기되어야 하고, 중재판정부가 권한을 월권하였다 소는 중재절차 중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자마자 제기되어야 한다.⁵¹⁾ 중재인의 관할재판권과 적법성은 중재인 자신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만약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관할재판권을 기피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앞에서만 기피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인도의 중재·조정법 제34조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관할재판권인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재판정 취소의 소 기간이 끝났거나, 항소가 거절된 경우에는 중재판정은 법원의 명령으로 간주되어 당사자를 구속한다. 인도 대법원은 *Shreejee Traco(I) Pvt. Ltd. v. Paperline International Inc.* 사건에서 국제중재도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은 인도 중재·조정법의 part I의 11조에 의거하여 법원에 있지만, 중재절차가 중재지의 법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New York협약에 따라야 한다며 인도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⁵²⁾.

49) 인도 중재·조정법 제15조.

50) Sumeet Kachwaha, op., cit. p.114.

51) 인도 중재·조정법 제16조 제2항과 제3항.

52) Sumeet Kachwaha and Dharmendra Rautray, op., cit., p.3.

1996년 중재·조정법에서는 1872년 증거법과 1908년 민사소송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어 중재절차가 더욱 융통성을 갖도록 허용하였다.⁵³⁾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구제의 형태 및 중재시간 등을 고려하여 임시적 구제를 인정할 수 있다. 인도법원은 보전, 어떤 상품의 판매, 분쟁 금액의 담보, 재산의 임시소유(유치), 보전조치 또는 검사 등과 같은 가치분 조치에 대한 명령을 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⁵⁴⁾ 법원은 또한 가치분 금지명령을 행하거나 또는 분쟁 목적물의 보호를 위한 관리인을 지명하거나, 중재판정의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 인도는 제도적으로는 현재 당사자자치원칙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중재인중 상당수가 전직 판사로 구성되어 있어 중재절차도 법원의 소송 절차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탄력적인 절차운영이라는 중재절차의 장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⁵⁵⁾

3. 중재판정 및 집행의 특성

(1) 중재판정 및 취소

중재판정은 당사자 합의에서 달리 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당사자가 중재절차중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경우 중재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 요청에 의하여 중재인은 합의 사항을 토대로 화해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1인 이상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중재판정문에 대한 중재인 서명은 일부 중재인의 서명이 누락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수 중재인의 서명만 있어도 충분하다.⁵⁶⁾ 또한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 중재절차 중 임시적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판정은 몇 가지 합리적인 예외를 제외하곤,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의 최종 명령처럼 강제할 수 있는 최종 해결의 효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인도법원은 ITI Ltd. v. Siemens Public Communications Network Ltd. 사건⁵⁷⁾에서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항소가 허용하도록 규정한 제37조의 규정을 무력화시켰다. 즉,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의하여 항소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중재·조정법 제37조뿐만 아니라, 중재절차 중 법원의 개입을 제한

53) MSc in China in Comparative Perspectives, op., cit., p.11.

54) Vaish Associates, Advocates, op.cit., pp.71-72.

55) MSc in China in Comparative Perspectives, op., cit., p.12.

56) 인도 중재조정법 제31조.

57) Supreme Court of India, AIR 2002 SC 2308, 2002 (4) ALD 47 SC 20 May 20, 2002.

한 제5조의 규정을 약화시켰다.

1940년 중재법에서는 중재판정상에 명백한 위법행위나 잘못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사유이었는데, 당사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데 활용하였다. 1996년 중재·조정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합의가 부적절하거나, 당사자중 한명이 부적격하거나,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 중재판정이 내려졌거나,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그 이후 절차가 당사자의 합의나 중재지의 법률에 따르지 않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동 중재판정이 거부되어 당사자를 구속하지 못하는 경우, 다툼이 되고 있는 문제가 인도법에 의해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판정의 집행이 인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⁸⁾ 특히 인도에서 공서양속은 매우 제어하기 힘든 말(unruly horse)이다.⁵⁹⁾ 인도 법원은 공서양속위반에 대하여 국내 중재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로 확대하였고,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였다. Penn Racquet Sports v. Mayor International Ltd. 사건에서 인도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이 단순히 인도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그 판정의 집행을 거부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⁶⁰⁾ 한편, The Phulchand v. Novorossiysk 사건에서 법원은 공서양속을 넓게 해석하여 중재판정이 명백히 불법일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이 판례는 인도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이 계약의 명시적인 조건에 반하는 경우 또는 인도법의 기본원칙, 인도와의 이해관계 또는 정의나 도덕에 반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⁶¹⁾ 이상을 살펴보면, 인도는 중재·조정법에 따라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이의 집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인도법원은 국내중재에 적용하던 공서양속에 대한 해석기준⁶²⁾을 외국중재판정에도 적용함으로써 New York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당사자들이 공서양속위반을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데 악용되고 있어 인도기업과 거래하는 외국인들은 이를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58) 인도 중재·조정법 제31조.

59) Dharmendra Rautray, "The "Public Policy" Hurdle to Enforcement of Foreign Awards in India", *Dispute Resolution Journal*, Nov. 2011/Jan. 2012, p.16.

60) *ibid.*, p.17.

61) Krishna Sarma, Momota Oinam and Angshuman Kaushik, *op.*, *cit.*, p.19.

62) 인도 대법원은 Oil and Natural Gas Commission v Saw Pipes간 인도 국내중재사건에서 1940년 중재법에 의해 내려진 Renusagar Power Co Ltd v General Electric Co Ltd에서 합의된 공서양속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여, 법적 조항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모든 중재판정을 취소하였다.

(2) 중재판정의 집행

각국은 독자적으로 사법적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 타국에서 인정받고 그에 따른 효력을 발생시키는 승인과 집행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⁶³⁾ 효과적인 법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는 중재판정집행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명령처럼 강제할 수 있으며, 집행은 민사소송법에 의거한 소송의 명령처럼 집행될 수 있다.⁶⁴⁾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국내 중재의 경우는 1908년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명령으로 집행된다. 인도 중재·조정법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New York Convention에 의한 중재판정과 Geneva Convention에 의한 중재판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협약에 의한 중재판정이든 외국중재판정의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집행판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즉,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중재판정문 원본 또는 사본, 중재합의 원본, 외국중재판정의 증명, 외국어로 된 판정문의 경우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인도법에 따라 공인된 영어번역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⁶⁵⁾ 인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 중재절차를 지배하는 법이 준거법이 되어 인도 국내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예를들면, 인도 대법원은 Bhatia International v Bulk Trading SA사건⁶⁶⁾에서 중재장소가 외국인 외국중재절차 중 중재판정부가 요청한 임시적 조치들을 법원이 인정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원의 관할권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인도 내에서 행해지는 중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범조항을 이탈하는 결정이다.

V. 결론

무역거래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대체적분쟁해결방법 특히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을 권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인도에서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 사건의 적체, 판사들의 비리 등으로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중재에 의한 해결이 보다 효과적이다. 인도는 글로벌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UNCITRAL 모델법을 토대로

63) 김용길, “우리나라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0권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0. 12, p.10.

64) Krishna Sarma, Momota Oinam and Angshuman Kaushik, op., cit., p.22.

65) 인도 중재·조정법 제47조.

66) Supreme Court of India, Appeal (civil) 6527 of 2001, March 13, 2002.

1996년 중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중재법의 개정이후로 인도는 임의중재로 이루어지던 중재가 임의중재의 문제점인 경험있는 중재인의 부족 및 잦은 심문기일연기로 인한 비용증가로 점차 기관중재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미흡한 인도의 중재제도를 고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인도 중재·조정법의 특징을 구 중재법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의 중재·조정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당사자자치를 인정하여 중재절차, 중재인선정 및 기피 등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둘째, 동일법에 국내 및 국제 중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셋째, 법원의 개입을 중재인선정 및 임시적 보전처분에 한하도록 최소화하였다. 넷째,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 정하되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수석재판관이 국제 상사 중재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수석재판관이 중재인 선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순히 법원에서 지명하도록 UNCITRAL 모델법 및 한국의 중재법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재인선정권자를 정해두었던 특징을 갖고 있다. 다섯째,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재나 유효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그 자신에 대한 관할재판권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New York 협약과 Geneva 협약에 의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다.

인도 중재·조정법은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였다. 하지만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법률을 폐기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여 실제로 중재법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있어서 공서양속의 위반이라는 의미를 확대 또는 축소 해석함으로써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인도 밖에서 결정된 중재판정의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인도기업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가급적 당사자간 우호적인 해결을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인도의 각 ADR방법들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ADR방법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에는 인도의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전의 관련 판례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거래 전과 거래 중에 신용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인도관련 논문들을 토대로 인도의 구 중재법과 현행 중재법을 비교하여 인도의 중재·조정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재법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과 비교하여 한국과 인도

중재제도의 차이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광수, “한·인도 무역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2010. 봄호.
- 김용길, “우리나라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10. 12.
- 김희준, “인도의 통상환경과 상관습에 관한 소고”, 「통상정보연구」 제8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6.9.
- 박양섭,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과 인도중재원 중재규칙 비교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3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8.
- 박찬호, “인도의 사법제도와 소송외 분쟁해결제도”, 「아시아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9.
- 신군재, “ADR을 통한 인도기업과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4 권제3 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9.
- _____, “한·중·미 중재인의 선정 및 기피에 관한 비교연구”, 「중재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1. 3.
- _____, “한국에서 ADR정착화를 위한 상설ADR 기관의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 제161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6. 8.
- 이종원, “한·인도간의 통상분쟁 현황과 사례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0. 9.
- 최남석, “한국 수출쇼크, 신시장 개척으로 해결해야”, 「KERI Column」, KERI 한국경제연구원, 2012.8.17.
-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인도편」, 해외지적재산권보호센터, 2008.10.
- 포스코경제연구소, “Special Report; 인도 경제 난조의 원인, 공급 부족에 있다”, 「Chindia Journal」 Vol.67 March 2012.
- KOTRA, “인도내 비즈니스분쟁, 소송해결 기대어렵다”, 뭄바이무역관 자체보고서, 2009.08.31(<http://www.globalwindow.org>).
- Gupta P. K. and Mittal S., “Commercial Arbitration in India”, *IPEDR* Vol.2, 2011.
- Kachqaha S. and Rautray D., “Dependability, diversity and delay”, *IFLR Litigation & Dispute Resolution*(www.iflr.com; 23 April 2012).

- _____, Arbitration in India: An Overview, Kachwaha & Partners,
 [http://ipba.org/media/fck/files/Arbitration%20in%20India.pdf(2012.8.21방문)]
- Kachwaha & Partners, “The Indian Judicial System: An Introduction”,
 (www.kaplegal.com/articles/indian-judicial-system.html; 20 Nov.2011).
- Kachwaha S., “The Arbitration Law of India: A Critical Analysis”, *Asia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Vol.1 No.2, 2005.
- Kapoor A., “Scope of Judicial Intervention i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 Indian Council of Arbitration Vol. XLVII, ICA, July-September, 2010.
- Rautray D., “The “Public Policy” Hurdle to Enforcement of Foreign Awards in
 India”, *Dispute Resolution Journal*, Nov. 2011/Jan. 2012.
- MSc in China in Comparative Perspectives, “A Comparative Study: The Rule of
 Law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China and India”,
 Candidate No.42207, Sep.2007, (http://www2.lse.ac.uk/economicHistory/Research/
 CCPN/publications/Dissertations/DissertationsCCP/42207.pdf).
- Sarma K., Oinam M. and Kaushik A., “Development and Practice of Arbitration
 in India-Has it Evolved as an Effective Legal Institution?” *CDDRL
 Working Papers*, No. 103, Center on Democracy, Development, and The
 Rule of Law(CDDRL), Oct. 2009.
- Shah K. and Adesokan J., “Turning India Into a Hub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Corporate Counsel*, August 7, 2012.
 (http://www.law.com/jsp/cc/PubArticleCC.jsp?id=1344159194550&Turning_
 India_Into_a_Hub_for_International_Arbitration)
- Sharma V. and Agarwal P., “Rendering India Into An Arbitration Friendly
 Jurisdiction- Analysis of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1996 *NUJS LAW REVIEW*, 3 *NUJS L. Rev.*535,
 2010, (http://www.nujslawreview.org/articles2010vol3no4/vasudha.pdf).
- Vaish Associates, Advocates, REPORT ON Strategies for Doing Business in India,
 The Commercial Section of the Royal Norwegian Embassy, 2010.
- DM Popat, “ADR and India: An Overview”, *The Chartered Accountant*, December
 2004.
- Xavier A., Symposium: Mediation: Its Origin and Growth in India, *Journal of
 Public Law & Policy*, Vol. 27, 2005.

Abstract

A Study on the Main Characteristics in India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Koon-Jae Shin

The significant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 over the last few decades has been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merc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India. Understanding the Indian dispute resolution system, including arbitration, is necessary for successful business operation with Indian companies.

This article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of India's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in order to help then traders who enter into business with Indian companies to settle their disputes efficiently.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1996) based on the 1985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1976, has a number of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following: (i) this act covers ad hoc arbitration and institutional arbitration (ii)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have no option except arbitration in case of any dispute (iii) the parties can choose their own laws, places, procedures, and arbitrators (iv) the decision of the arbitrators is final and binding (v)role of the court has been minimized and (vi) enforcement of foreign awards is recognized.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court decisions that have not been in tune with the spirit and provisions of the Act. Therefore, Korean companies insert the KCAB's standard arbitration clause into their contracts and use India's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to strategically resolve their disputes. Additionally, Korean companies investigate Indian companies' credit standing before entering into business relations with them.

Key Words : India, Characteristics of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Arbitration,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ADR